

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8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8. 김영미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4.
- 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22. 9. 2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차해영 의원

가. 제안이유

헌혈사업 민관협력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,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인용 조문의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- (2) 헌혈추진협의회 구성(안 제7조~제9조)
 -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
- (3)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0조)
 - 헌혈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
- 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(3) 기타
 - 입법예고 : 2022. 9. 15.~ 9. 19. 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활성화로 지역내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7조 및 안 제9조는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’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나열하였으며,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0조는 구청장이 헌혈 장려를 위해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- 혈액은 현대의료체계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헌혈 권장 시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됨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현재 전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-19 발생으로 인해 과거보다 헌혈인구가 대체적으로 줄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 사회 중심에서 헌혈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공포 후 집행부서에서는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방안과 인센티브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<표 1. 마포구 소재 헌혈의 집(홍대센터) 헌혈현황(2019년~2021년)>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증감
홍대센터	18,150건	14,460건	14,644건	△3,506건 (△19.3%)

※ 헌혈의집 홍대센터 (마포구 동교동162-1 대화빌딩 6층)

[관 계 법 령]

「혈액관리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6(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조의8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 [본조신설 2021.12.21] [[시행일 2023.6.22]]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